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 
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연철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조문의 오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주요내용

-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의 오기 정정(안 제4조)
  - 영 제25조제1항제4호카목 ⇒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(안 제4조)
  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
    - ⇒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- 제1조의 약칭 생략.
- ~의 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른
- 당해 ⇒ 해당
- 기타 ⇒ 그 밖의
- 범위 안에서 ⇒ 범위에서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심의제외대상 변경 및 조문의 오기정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